

2023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수정공고

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‘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’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0일

구리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-3 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
- 사업기간 : 2023. 3. 2 ~ 12. 1.
- 지원대상 :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'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(Tier-1 이하)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(지게차, 굴착기, 로더, 롤러)를 소유한 자(법인 포함)
 - ※ '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,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'05년 이전 제작, 75kW 미만은 '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
- 지원물량 : 3대 (49,500,000원)
- 지원내역 :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

<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 게 차						굴 착 기		
	2톤급		4톤급		6톤급		5톤급		14톤급
	Tier-3	Tier-4	Tier-3	Tier-4	Tier-3	Tier-4	Tier-3	Tier-4	
장치가격 및 보조금	9,628	11,493	15,582	18,000	17,609	19,295	12,310	14,386	-

1.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
2.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(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, 동의서 등)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(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)

< 로더 및 롤러,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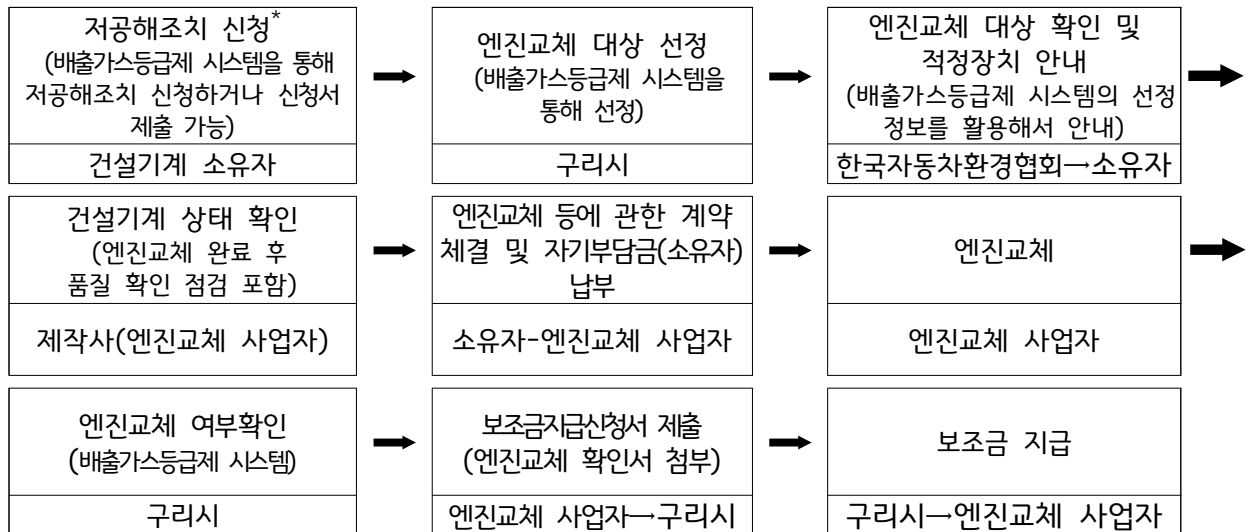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)

구 분	로더		롤러	지게차
	19kw 이상 37kw 미만	37kw 이상 56kw 미만	19kw 이상 37kw 미만	LPG
장치가격 및 보조금	11,672	12,521	10,856	16,583

1.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
2.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(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, 동의서 등)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(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)

2. 사업 진행절차

< 건설기계 엔진교체 절차 >



* (사이트 주소)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[www..mecar.or.kr](http://www.mecar.or.kr))

-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았거나,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절차에 따라 **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**을 통해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구리시로 제출

3. 교체사업자별 연락처(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)

No	제작사	연락처	지게차						굴착기			로더		롤러	
			2톤			4톤		6톤		5톤		14톤	19kw 이상 37kw 미만	37kw 이상 56kw 미만	19kw 이상 37kw 미만
			LPG	Tier 4	Tier 3	Tier 4	Tier 3	Tier 4	Tier 3	Tier 4	Tier 3	Tier3			
1	이알인터내셔널	1588-8395	-	-	○	-	○	-	○	-	○	-	-	-	-
2	알오씨오토시스템	031-270-6358	-	○	-	-	-	○	-	○	-	○	-	-	-
3	크린어스	1577-9014	-	-	○	-	○	-	○	-	○	-	-	○	-
4	HK-Mns	070-4267-2736	-	-	○	-	○	-	○	-	○	-	-	-	-
5	에코앤드림	1644-0879	-	-	○	-	○	-	○	-	-	-	○		○
6	세라컴	1644-5232	-	-	○	-	○	-	○	○	○	-	-	-	-
7	일진하이솔루스	031-220-0863	○	○	-	-	○	-	○	○	-	-	-	-	-
8	디엔지비	031-355-4900	○	-	-	-	-	-	-	-	-	-	-	-	-

4. 기타 참고사항

-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(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)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(2년) 내 수출·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
 - ※ 회수기준 :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
 -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[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]
 -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
-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「'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2023. 환경부)」에 따름
- 대상자 선정 기타 문의 :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(☎031-550-2329)

붙임 1.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.

붙임 2.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1부. 끝.

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(건설기계 엔진교체)

- 건설기계 엔진교체 유의사항 안내 -

- 정기적인 건설기계 정비와 제작사 관리 메뉴얼 준수
- 급출발 및 급가속 등 작업 안전에 우려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**관련법**(「건설기계 관리법」,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) **준수**
-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**불법적인 조작, 훼손, 탈거 금지**
 - *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7조의2)

<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>

1. (부착 방법)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계기판 근처에 부착하여야 함
 2. (규격 크기) 높이는 70mm로 하며, 길이는 100mm로 함
- ※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(HY견고딕)로 하되,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